

의안번호	2209222
의 퇴 인	송옥주 의원
회 답 일	2025. 5. 29.
추계번호	25F178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장기계약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4조의36제1항(장기계약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)	○ 화주기업이 내항선사와 장기운송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화주기업이 내항선사에 지불한 운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－ 공제대상: 내항선사와 3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, 환경친화선박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기업 ※ 단, 환경친화선박은 환경친화적 선박 등급 3등급 이상을 의미 － 공제율: 운송비용의 3% － 공제한도: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의 10% － 적용기한: 2030.12.31.	
2	안 제104조의36제2항(장기계약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)	○ 내항선사가 환경친화선박 등을 제공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으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 신설 － 공제대상: 환경친화선박 또는 선령이 15년 이하인 선박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내항선사 － 공제내용: 해당 계약으로 얻은 소득의 50%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4조의36제1항(장기계약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04조의36제2항(장기계약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장기계약 화주기업 등이 지불한 운송비용 또는 환경친화선박을 제공하는 내항선사가 해당 계약으로 발생한 소득 등의 일부를 세액공제 또는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할 경우,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4조의36 신설)
 - 안 제104조의36제1항은 화주기업이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맺거나, 환경친화선박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화주기업이 내항선사에 지불한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해당 비용을 지출한 화주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－ 공제대상: 내항선사와 3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, 환경친화선박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기업
 - ※ 단, 환경친화선박은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친환경선박법’)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(3등급 이상)으로 인증을 받은 선박을 의미
 - － 공제율: 운송비용의 3%
 - － 공제한도: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의 10%
 - － 적용기한: 2030.12.31.
 - 안 제104조의36제2항은 내항선사가 환경친화선박 등을 제공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으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내항선사의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－ 공제대상: 환경친화선박 또는 선령 15년 이하 선박을 제공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내항선사
 - － 공제율: 해당 계약으로 발생한 소득의 50%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화주기업과 내항선사간 장기계약 및 환경친화선박을 통한 계약체결 건수와 계약에 따른 화주기업의 비용, 내항선사의 환경친화선박 등의 제공을 통한 소득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 - 안 제104조의36제1항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향후 화주기업과 내항선사간 장기계약 및 환경친화선박을 통한 계약건수, 계약에 따라 화주기업이 지불하는 비용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

관련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
- 화주기업과 내항선사간 장기계약 또는 환경친화선박을 이용한 계약의 체결여부와 규모(비용)은 향후 경기변동에 따른 운송비용에 대한 전망,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등에 대한 국제규정 등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- 참고로, 친환경 선박 인증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환경친화선박은 2020년 인증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근 4년(2021~2024년)간 102척에 대하여 인증되었으며, 이 중 내항선박은 50척임

[표 1] 환경친화선박 인증 현황: 2021~2024년

(단위: 척, 톤)

인증연도	내항		외항		계	
	선박수	톤수	선박수	톤수	선박수	톤수
2021	8	1,134	—	—	8	1,134
2022	10	2,556	2	232,000	12	234,556
2023	10	1,796	22	2,252,643	32	2,254,439
2024	22	46,797	28	2,708,042	50	2,754,839
계	50	52,283	52	5,192,685	102	5,244,968

자료: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출자료

- 안 제104조의36제2항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내항선사가 환경친화선박 및 선령 15년 이하 선박을 통해 체결하는 계약건수, 계약에 따른 소득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관련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 - 향후 내항선사가 환경친화선박 및 선령 15년 이하 선박을 통한 계약의 체결여부와 소득은 선박운송 수요, 국제유가 등 운송비용, 선박의 선령과 온실가스 배출 등에 대한 국제규정 등의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 - 참고로, 2025년 4월 기준 등록선박 8,448척 중 선령 15년 미만 선박은 2,174척으로 전체 등록선박의 25.7% 수준

[표 2] 등록선박의 선령별 현황: 2025.4. 기준

	계	15년 미만	15~30년	30년 초과
선박수(척)	8,448 (100.0)	2,174 (25.7)	3,481 (41.2)	2,793 (33.1)
톤수(만톤)	2,010 (100.0)	1,123 (55.9)	778 (38.7)	109 (5.4)

주: ()안은 전체 선박수 및 톤수 대비 비중(%)

자료: 해양수산부, 「등록선박통계」, 2025.4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